

# 사천시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의안번호 제36호 99. 8. 6)

총무위원회

1999. 8. 12

## 1. 심사경과

- 가. 1999. 8. 6 사천시장 제출
- 나. 1999. 8. 6 총무위원회 회부
- 다. 1999. 8. 12 제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 2. 제안설명 요지(행정과장 최문섭)

### 가. 제안이유

제2의견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과 시민의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 사천시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 위원수를 확대 조정하기 위함.

### 나. 주요골자

현행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 것을 3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함.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성호영)

이 조례안은 1999. 3. 17 제3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재차 제출된 의안으로서 현행 사천시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에 의거 우리시의 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위촉 위원수를 위원장 포함 2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35인이내로 증원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인 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에는 시·군의 위원회 구성인원을 별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지방자치단체 「제2의견국」 추진지침에서 20~50인 정도의 민·관합동위원으로 구성하되 인구·읍면동수 등을 감안하여 적의조정토록 하였음.

이에 맞추어 우리시도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나 본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구성원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의 참여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시행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  
결하여 부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음